

◎한국 IPG의 활동

· 꼭 알아야 할 한국 지식 재산제도를 주제로 제35회 한국 IPG 세미나 개최 01

◎IP를 알자

한국IP뉴스 06
「신·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07
-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 법안 ‘물거품’ 될까
-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

NEW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megaphone 사무국으로부터

상쾌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제트로 한국 지체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korea-ip>)에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와 법 개정 정보, 판례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ghtbulb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으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quiz 퀴즈를 맞춰봅시다!

현재 한국에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이 허용되고 있을까요?

① ○ ② ×

※ 정답은 본지 5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IPG의 활동

‘꼭 알아야 할 한국 지식재산제도’를 주제로 제35회 한국 IPG 세미나 개최



한국에서는 지식재산을 둘러싸고 다수의 법 개정, 특허청의 조직 개편 등 기동성 있는 대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상황 속 현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2023년 6년 27일 ‘꼭 알아야 할 한국 지식재산제도’를 주제로 제35회 한국 IPG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자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JETRO 서울사무소에서 부소장을 지낸 츠치야 신고 씨로, 재임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한국의 지식재산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현시점의 한국 지식재산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일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제

1. 국가적 추진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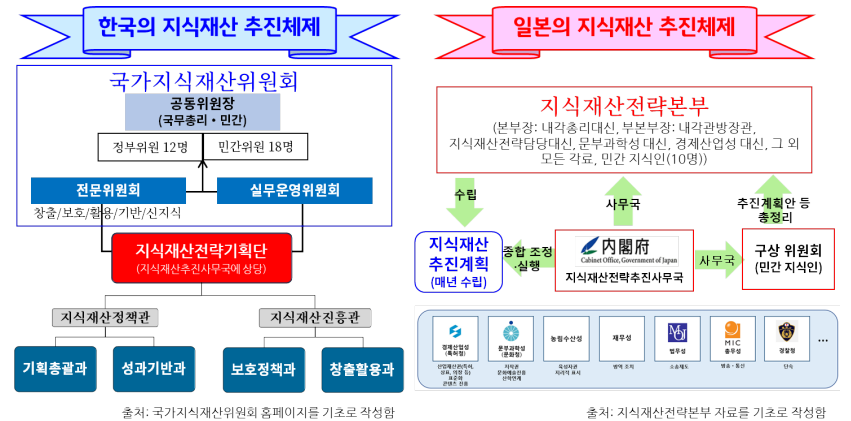


그림1: 한일 지식재산 추진체제 비교(세미나 자료 인용)

한국IPG의 활동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일 양국의 지식재산 추진체제는 범부처적 추진체제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본의 '지식재산전략본부'에 상당하는 기관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으며 국가 지식재산 추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체적인 사무 절차는 일본의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에 상당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하위 계획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2023년)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년) 시행 두 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2. 특허청 체제



그림2: 한국 특허청 조직도(세미나 자료 인용)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특허청은 이인실 청장을 수장으로 하여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1일에는 일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하여 한국의 핵심기술인 반도체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IPG

2. 지식재산 제도 비교

1. 한일 특허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한국 특허법은 일본 특허법을 참고하여 제정되어 일본 법과 유사한 부분(표1 참조)이 많은 한편 독자적인 법률(표2 참조)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실시해야 할 업무를 상세히 규정한 법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법	일본 특허법
(목적)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이로써 산업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제1항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요건) 제29조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언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특허요건) 제29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의 발명을 제외하고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일본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언히 알려진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일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3. 특허출원 전에 일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배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

표1: 한일 특허법의 유사점(세미나 자료 인용)

법률명	주요 내용
◎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 · 직무발명 규정(이전에는 특허법에서 규정) · 산업재산권 정보화 · 발명 평가기관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 산업디자인진흥법	·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 · 산업디자인 육성·개발사업 실시 ·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 전문인력 양성 · 한국디자인진흥원 설립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명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 학생 발명 활동 촉진 · 발명교육센터 설치·운영

표2: 한국 특허법의 독자적 법률(세미나 자료 인용)

2. 특허제도 개요

한국의 특허제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특허제도 개요

- ◎ 심사청구기간 3년(2017년 2월까지)는 5년)
- ◎ **심사유예제도** →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후 24개월이 경과된 후,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음
- ◎ 우선심사제도(유료)
- ◎ 외국어출원(영어출원), **특허법조약(PLT) 미가입**
- ◎ 유예기간(Grace period) 12개월 → 출원 시뿐만 아니라 **보정가능 기간 및 설정등록기간**에도 주장 가능
- ◎ 청구항의 다중 복수 인용 금지(일본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폐지)
- ◎ **재심사제도**(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2022년 4월 20일에 30일에서 연장), 보정 요함)
- ◎ 거절결정불복심판(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2022년 4월 20일에 30일에서 연장), 보정 불가)
- ◎ 2007년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무효심판절차로 통합(일본의 경우 2004년에 통합) → 2017년 특허취소신청제도 신설(일본은 2015년 이의신청제도 도입)
- ◎ **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도** → 심사관이 특허결정 이후 설정 등록 전에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하는 제도
- ◎ 권리범위확인심판 → 일본의 판정제도와 유사
- ◎ **프로그램의 청구 범위는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한함** → 2020년 3월 시행법에서 방법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발명의 실시예에 포함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때도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됨
- ◎ 특허, 디자인 간 변경 불가
-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2019년 7월)**
- ◎ **2022년 4월 20일 분리출원제도 도입**(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되는 기각심결을 받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
- ※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일본의 제도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

한일 양국의 특허 절차는 다음의 그림3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심사 실무는 거의 동일하지만 거절결정 후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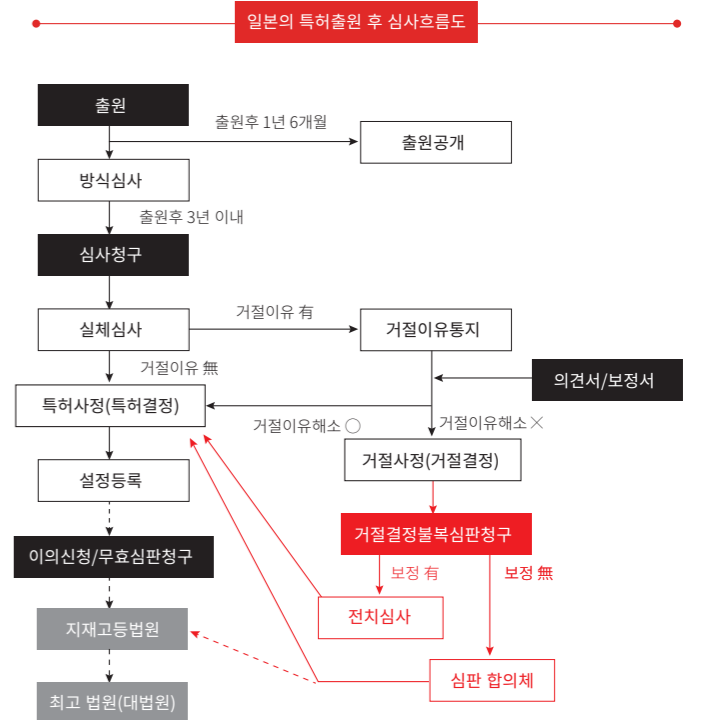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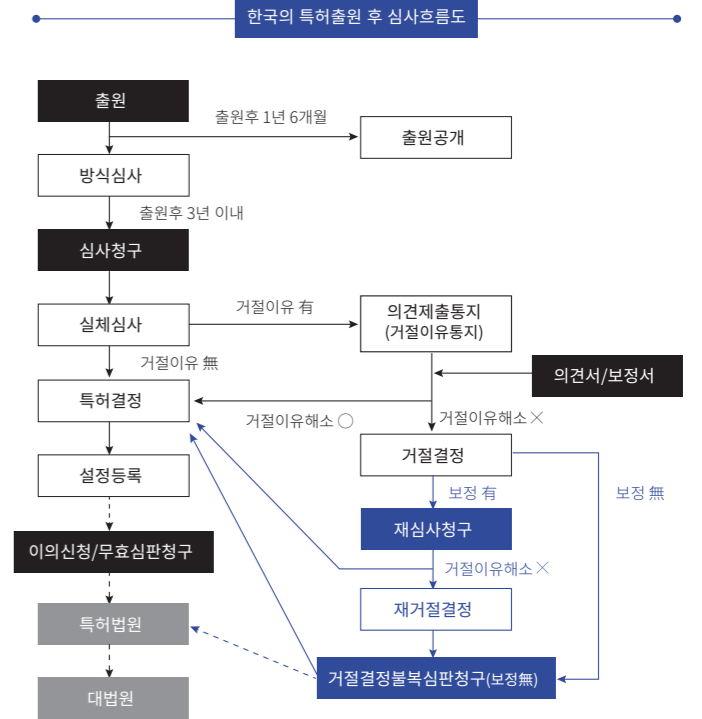


그림3: 한일 양국의 특허 절차

3. 실용신안제도 개요

한국의 실용신안제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98년 **심사주의에서 무심사주의**로 변경(⇔일본은 1994년 무심사주의로 변경, 현재까지 시행 중), 2006년 **심사주의**로 재변경

-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방법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심사청구기간 3년**
- 외국어출원(영어출원), **특허법조약(PLT) 미가입**
- 심사에서 진보성 판단 시 특허의 경우 '대상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인 반면 실용신안의 경우 '극히 용이하게 고안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
- 특허 출원이 심사에서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한 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 가능
- 권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2019년 7월, 특허법 준용)**
- **현재 대폭 개정된 실용신안법 개정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폐기될 전망**

- '입체', '색채', '소리', '**냄새**', '동작', '위치', '홀로그램' 등 비전형상표 인정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2005년~)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 가타카나, 히라가나, 한자로 표기된 상표 출원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2020년 10월)**
- **2022년 4월 20일 시행법에 따라 재심사제도 도입**
- 2023년 3월 20일 상표법 개정안(상표공존동의제도) 제출

4. 디자인제도 개요

한국의 디자인제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일본은 2020년 시행법에서 '등록일로부터 20년'을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개정)
- 물품의 종류에 따라 심사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구분
- 복수 디자인 일괄 출원 가능(일본은 2021년 시행법에서 도입)
- 관련디자인의 경우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 가능(2023년 12월 21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될 예정↔일본은 2020년 시행법에서 10년으로 연장)
- **글자체(폰트)도 보호 대상에 해당**
- 유예기간(Grace period) 12개월(2017년 9월 이후)
- 특허출원에서의 변경은 불가
- **이의신청제도는 일부 심사출원에 한함**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2020년 10월)**
- 화상(GUI) 디자인(물품 이외의 화상 그 자체) 보호(2021년 10월)→2020년 일본 시행법과 동일하나 **건축물, 인테리어는 포함되지 않음**

5. 상표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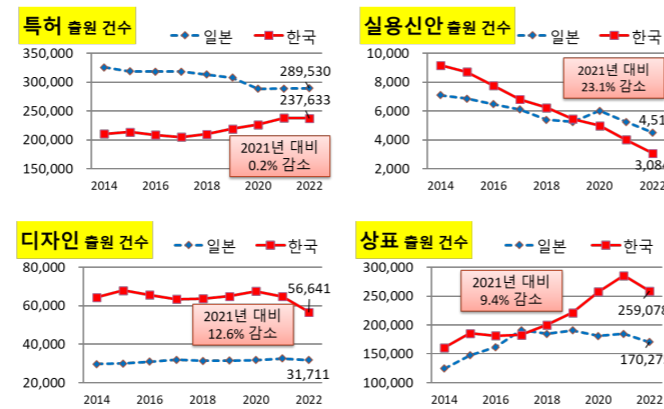
한국의 상표제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IPG

- **추가등록출원제도**(출원 중 또는 등록 후에 지정상품 추가출원 가능)
- **권리부여 전** 상표이의신청제도(↔일본의 경우 **권리부여 후** 이의) ...누구라도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한일 산업재산권 통계

1. 권리별 출원 건수 비교

한국의 2021년 특허 및 상표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 건수도 역대 최고치인 592,615건(전년 대비 6.3% 증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2022년에는 권리별 출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 건수는 556,436건(전년 대비 6.1% 감소)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일본 특허청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한국 특허청 지식재산백서, 한국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월보

그림4. 한일 양국의 출원 건수 추이 비교(세미나 자료 인용)

2. 한국의 출원인 유형별 출원 건수

특허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일본은 대기업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림5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중소기업 및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 **IP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삼성과 애플 사건의 영향)**

- 정부 지원 대책(수수료 감면 외 보조금 및 특허출원과의 연계 등)
- 저렴한 대리인 비용
- **국내보다 해외를 중시하는 대기업의 출원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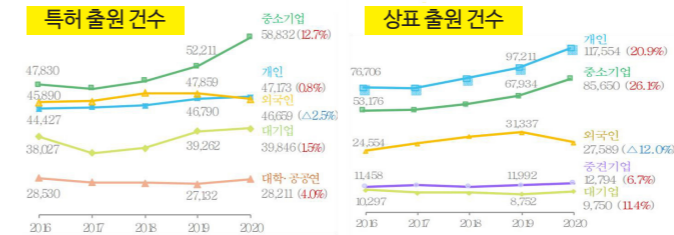


그림5. 특허 및 상표 출원인별 출원 건수(세미나 자료 인용)

한국의 지식재산 소송체계

한국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체계 및 소송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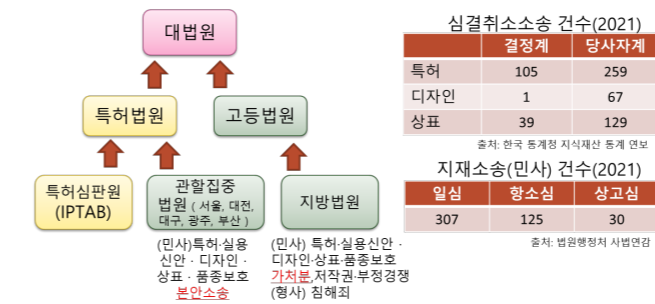


그림6. 한국의 지식재산 소송체계 및 소송 건수(세미나 자료 인용)

한국 IPG 및 한국 지재 정보원 소개

지금까지 '꼭 알아야 할 한국 지식재산제도'의 일부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도 많고 날마다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PG

한국 지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

- 한국 지식재산 뉴스 (뉴스레터 매달 2회 발행)
- 법률 개정 정보, 정책 정보, 통계 정보
- 지재 판례 데이터베이스 (2001년 이후 500건 이상의 지재 판례 개요 및 전문가 어드바이스 제공)
- 각종 조사보고, 매뉴얼 등 제공 중

<https://www.jetro.go.jp/korea-ip>



JETRO 서울사무소 지식재산팀이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
정답은 @X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효처분을 내린 특허청을 지지하는 판결(2023년 6월 30일)을 내렸습니다. (2023년 7월 4일자 지식재산 뉴스 게재)



KOREA IP NEWS

※JETRO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4년간 연평균 19% 증가

| 한국특허청 (2023.4.25)

최근 발상(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등의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22년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4월 21일)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 총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297건으로 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보 복잡하지 않아 자부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② 특허청, 해외 기술유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나선다

| 한국특허청 (2023.5.24)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5월 25일(목)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하고, 제1회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액이 최소 2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나 해외 유출업체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구성됐다.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연구방향에 따라 심층연구를 통해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국의 해외 수사공조 방식 점검(시스템 모니터링), 해외 체류 중인 범죄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연결망(네트워크) 확립,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기법 도출 등 실질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③ 한·일 특허청장 회의, 6년 만에 재개 | 한국특허청 (2023.6.1)

특허청은 5월 31일(수) 일본 도쿄의 일본 특허청에서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청장회의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이인실 특허청장과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정보화, 심사관 역량강화 등의 분야 실무협의체 재가동, ▶양청 간 심사관 교류,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경험 공유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 청장은 양국 출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공동심사(CSP)에 대해서도 향후 정보교환 등 실무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청 간 서틀 외교의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④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설 조직으로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

| 한국특허청 (2023.6.23)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기 위해 23일(금)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10년 9월 '상표경찰'을 출범시켜 위조상품(상표침해) 수사를 시작한 이래로 2019년 3월 수사범위를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해 '기술경찰'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 파일의 암호화나 은닉·삭제 등 지식재산 침해·탈취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수사 인력이 50명에 불과해 지식재산범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에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는 지식재산 침해피해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 상표위조품 감정 지원,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물품 정보수집, 디자인 모방품 단속 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범죄 입증에 필수적인 방대한 양의 전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법의학(디지털 포렌식) 정보 수집에 필요한 장비, 삭제자료 복구, 암호해제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File No.177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 법안 '물거품' 될까



2023년 5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변리사 업계를 들썩거리게 만든 이슈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그 경위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1. 일본의 특정 침해소송대리업무제도(사전지식)

이번에 쟁점이 된 건 바로 일본에서 말하는 특정 침해소송대리업무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었던 특정 침해소송(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반도체 회로 배치에 관한 권리의 침해 또는 특정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변리사가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변호사와 공동수임하며 공동수임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출정하는 것이 원칙).

일본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2년, 당시 침해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수가 부족하여 변리사법 개정(2003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 시험에 합격 후 일본 변리사회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변리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 법안의 향방

이처럼 일본에서는 약 20년 전에 특정 침해소송대리업무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과거 수차례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 도입의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6일, 변리사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본 법안이 동일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변리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엔야말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당 법안의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특허청장이 신중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동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제2소위원회로 회

부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변리사의 경우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에 해당하지만 변호사의 경우 업무 독점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 상충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인 특허청장의 태도에 반발한 약 400명의 변리사가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특허청장의 사임과 변리사의 감독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과 14일에는 실제로 야당의원이 변리사의 감독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19일에는 한국 변리사회 등 5개의 전문가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원 1,000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2소위원회는 5월 24일 본 법안에 대하여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앞으로의 동향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가 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본 법안은 현 국회의 임기 만료(2024년 5월)에 따라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22대 차기 국회 정세에 따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재발의 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관계자와 조율을 마친 후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제출하고 나서 관계자와 조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안이 제출되어도 통과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츠치야 신고 전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1년 일본특허청 입청, 통상·반도체분야 심사관·심판관, 정보기술통광실 실장보좌, 심판관 과장보좌, 주임 상석심사관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소장 역임.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



특허청은 2023년 5월 1일, 특허청장 명의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란?

지식재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생소할 수 있는 규칙으로, 각국의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요금을 법률의 하위 규정인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하위 법령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정령,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3년 5월 1일 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특허 등록료(설정+연차) 인하
 - 모든 구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인하
- ② 특허심사청구료 일정부분 현실화
 - (현행)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14만3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 4천원을 가산한 금액
 - (개정)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16만6천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5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 ③ 상표 수수료 및 지정상품 개수 조정
 - (지정상품 개수 조정) 지정상품의 개수를 현행 20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10개를 초과할 경우 가산금 부과(개당 2천원)
 - (상표 수수료 조정)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단계에서의 현행 상표수수료에서 일률적으로 1만원 인하
- ④ 분할출원에 대한 가산료 도입
 - 가. 2회: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
 - 나. 3회: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
 - 다. 4회: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4배
 - 라. 5회 이상: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5배
- ⑤ 면제자의 면제건수 제한
- ⑥ 권리별 이전등록료 조정

⑦ 지정기간연장 불승인시 신청료 반환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전반에 대한 세세한 개정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분할출원에 대한 가산료 도입입니다. 분할출원이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새로운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분할이 적법한 경우 출원일은 원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분할출원에 대한 가산료의 경우,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럽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청이 2022년 12월에 발행한 '한국형 수수료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NPE와 외국법인이 단일성(위반의)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다양한 특허전략으로 분할출원을 악용(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심사관의 부담 증가, 해외 주요국 중에서 유럽특허청(EPO)이 분할출원시 출원료에 가산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분할출원에 대한 가산료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3. 앞으로의 일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한은 6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공포 및 시행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인사말

2020년 7월 JETRO 서울사무소 부임 후 약 3년 동안 한국 지식재산 정보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뉴스를 포함하여 다소 전문적이고 지루한 내용의 기사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세계도 있구나'하며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쁩 것입니다.

본 원고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게재되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초치야 신고 전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1년 일본특허청 입청. 통신·반도체분야 심사관·심판관, 정보기술통괄실 실장보좌, 심판과 과장보좌, 주임 상석심사관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소장 역임.